의안번호	2209778
의 뢰 인	윤준병 의원
회 답 일	2025.6.9.
추계번호	25B22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1조(감독 기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둠(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10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01조(감독 기관)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2	안 제106조(권한의 위임)		

2. 상세 사유

❑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용자 및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안 제101조제1항)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안 제106조) 내용임[2)]

○ 개정안의 시행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관을 둘 경우 근로감독관의 신규 채용으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으로 근로감독관을 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규 채용될 근로감독관의 수 및 직급별 인원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장래에 발생할 채용인원 및 이들의 직급 등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

1)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참고로, 동 개정안과 함께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근무하면서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781호)이 발의됨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